

# 연구윤리 규정

제정 2015년 12월 17일

1차 개정 2018년 4월 17일

2차 개정 2020년 3월 18일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높이고 의학연구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연구자의 책임과 의무)

연구자는 연구활동 및 결과가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고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데이터 위조” 는 임의로 만들어 낸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데이터 변조” 는 연구재료나 장비, 연구과정 등을 조작하거나,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임의 변경 및 누락함으로써 실제 연구내용이 논문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“표절” 은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.
- ④ “중복게재”는 연구자의 이미 게재된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제로 매우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의 편집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혹은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# 제4조(저자권, Authorship)

논문의 저자는 다음의 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- ①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,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한 자
- ②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수정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자
- ③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한 자

- ④ 연구의 정확성이나 무결성과 관련된 의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에 동의한 자

#### 제5조(세부내용)

- ① 투고 논문의 저자 및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.
- ②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 승인이 필요한 연구의 경우 투고 논문에 해당내용을 기술한다.
- ③ 학회지에 기재된 논문 중 데이터 날조 혹은 위조, 중복게재, 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저자는 관련내용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며 해명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“연구윤리위원회”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.

#### <연구윤리위원회>

-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반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운영된다.
  -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겸임하고,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제기된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 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-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.
  -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심의하며,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  -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소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.
  - 연구윤리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  -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.
  -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,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.
  -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④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을 삭제하고 사안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한다.

-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
-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원고 투고의 금지(2년)
-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